

의안번호	제627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24년 7월 3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627
----------	-----

제출연월일 : 2024년 7월 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도지정자연유산 등의 조사심의를 수행하게 될 충청북도 자연유산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연유산자료가 신설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충청북도 자연유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5조, 제6조)
- 도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및 해제 (안 제16조, 제22조, 제24조)
- 도지정자연유산의 관리 (안 제25조, 제26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의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다.
2. “충청북도 지정자연유산”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자연유산 중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국가지정자연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연유산을 말한다.
3. “충청북도 자연유산자료”란 국가지정자연유산과 충청북도 지정자연유산(이하 “도지정자연유산”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에 도지사가 향토자연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보호물”이란 도지정자연유산 및 충청북도 자연유산자료(이하 “자연유산자료”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5. “보호구역”이란 일정한 지역이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도지정자연유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와 토지의 원형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말한다.
7. “역사문화환경”이란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자연유산과 자연유산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자연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충청북도 자연유산위원회

제5조(설치)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도지정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
2. 도지정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도지정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의 현상변경 허가
4. 도지정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나 시설의 설치·제거·이전 등의 명령
5. 도지정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법 제41조의2에 따른 관할구역에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 및 해제 요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연유산의 관리와 활용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동·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국가

유산관리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제8조(위원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2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수는 도지사가 정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지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자연유산 보존·관리·활용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은 전문사항의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자연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자연유산의 종별에 따라 분장하여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를 따른다.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연유산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연유산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의 해촉·제척 등) ① 위원회의 회의, 회의록 작성, 관계자의 의견 청취,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문화유산조례”라 한다)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유산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3장 자연유산 보호의 정책 수립 및 기반조성

제14조(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보호계획이 수립되면 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그 시행 결과의 제출 대상, 시기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한다.

제15조(자연유산 관련 기관·단체의 지원) 도지사는 자연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4장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

제1절 지정 및 해제

제16조(도지정자연유산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자연유산으로 지정한다.

② 도지정자연유산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유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할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또는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자연유산의 보존가치

2.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시기 연기에 관해서는 문화유산 조례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유산”은 “자연유산”으로 본다.

제18조(지정에 관한 자료 제출) 시장·군수는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연유산이 있을 때에는 사진, 도면과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지정 고시 및 통지) ①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자연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20조(지정서의 교부)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자연유산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지정의 효력발생 시기)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은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도보에 고시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2조(지정의 해제)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 제42조에 따라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가 자연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지정 해제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요청을 받은 자는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전자 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른 지정 해제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지정 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효력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제21조에 따른다.

⑦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하며,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자연유산의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⑧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는 제6항에 따른 해제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연유산 지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⑨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가 천연기념물 및 명승으로 지정된 때에는 지정된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임시지정) ① 도지사는 도지정자연유산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연유산이 지정 전에 원형 보존을 위하여 시급히 지정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지정자연유산으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지정한 자연유산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에게 지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은 임시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관하여는 제16조와 제20조를 준용하되,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보의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제24조(자연유산자료의 지정) 도지사는 도지정자연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향토자연 보존상 가치가 있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한다.

제2절 관리

제25조(관리자의 선임 등) ①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해당 자연유산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하여 그 자연유산을 보존·관리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26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도지사는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군이나 그 자연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해당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군이나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 의견청취 절차, 고시와 통지, 소유자·관리자의 의무, 경비부담, 지정의 효력 시기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조례 제33조제2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문화유산”은 “도지정자연유산”으로 “문화유산자료”는 “자연유산자료”로 본다.

제27조(허가사항)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탁본 또는 촬영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도지정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자연유산을 표본, 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제28조(허가기준) 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자연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자연유산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자연유산 보호계획과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수립되어 있을 것

제29조(허가사항의 취소) ① 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2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요건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소속직원으로 두고 있는 도의 축산 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소속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나 동물보호단체

② 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경우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동물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추천하려는 시·군의 장 또는 관리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동물치료소로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적고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재교부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 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제31조(신고 사항)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해당 자연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과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連署)로 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에 변경이 있는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4.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6.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27조제1호에 따라 허가된 자연유산을 반출하거나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8. 제27조제3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자연유산의 현상변경 그 밖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9. 동·식물의 종(種)이 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32조(행정명령) ① 도지사는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관리상황이 그 자연유산의 보존에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 의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3.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 관한 자연유산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4.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동물·식물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제27조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명령을 명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건설공사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도지사, 시장·군수가 법 제10조에 따라 건설공사를 인·허가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도지정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천연기념물 및 명승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2.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자연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제1항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라 하여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의 수질오염을 초래하거나 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계의 상류에서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 등의 공사

2. 자연유산 경관을 훼손하거나 또는 역사·문화·자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행하는 도지사, 시장·군수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로서 자연유산 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로서 자연유산 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로서 자연유산 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4.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로서 자연유산 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5.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자연유산 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6. 그 밖에 자연유산 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④ 도지사, 시장·군수는 건설공사 등의 인·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제1항에 따라 검토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제3항에 따라 검토한 후 위원회 위원 등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자연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연유산이 국가지정자연유산인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현상변경)를 받아야 한다.
2.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연유산이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현상변경)를 받아야 한다.

제34조(기록의 작성·보존) ① 도지사와 해당 시장·군수 및 관리단체의 장은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연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연구기관에 도지정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보조금)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자연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도지정자연유산의 관리·보호, 수리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제34조에 따른 기록의 작성·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자연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6조(손실의 보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3.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4.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보관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그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37조(시·군의 경비부담) 시장·군수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에 대하여 그 보존·관리, 수리, 활용 또는 기록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8조(준용) ① 임시지정자연유산의 관리와 보호에 관하여는 제27조, 제3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6조를 준용한다.

제3절 공개 및 조사

제39조(도지정자연유산의 공개 등) ①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자연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자연유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자연유산이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도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를 도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정기조사) ① 도지사는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 자료에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3일 전까지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 등에게 자연유산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자연유산 소재 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자연유산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발굴·장애물의 제거, 표본채취,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는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아래 각 호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자연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생물자원관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
4.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2에 따른 과학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자연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전문법인

⑦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
2.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수리, 복구 등의 보존조치
3. 도지정자연유산의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와 이전

4.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5. 그 밖에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1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존·관리 현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및 조사에 필요한 행위 범위, 신분증 휴대 및 제시, 조사 행위에 대해서는 제4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42조(「충청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준용) ① 자연유산의 화재예방 및 재난방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수리 등, 국가유산 수리 용역 시공평가, 관람료의 징수, 표창 등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조례 제18조, 제19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유산”은 “자연유산”으로 “도지정문화유산”은 “도지정자연유산”으로, “문화유산자료”는 “자연유산자료”로 본다.

② 매장유산의 공고 등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조례 제5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유산”은 “자연유산”으로 “도지정문화유산”은 “도지정자연유산”으로, “문화유산자료”는 “자연유산자료”로 본다.

제4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26조에 따른 관리단체의 지정

2. 제32조에 따른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 행위자 등에 대한 행정 명령 및 조치

3.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경미한 수리

제45조(청문) 제2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그 허가를 취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24조제1항 및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도지정문화재 및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중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기념물은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도지정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도록 지명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에 따라 임명·위촉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종전의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 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1. 기 관 명 :

2. 대 표 자 :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지사 [인]

[별지 제3호서식]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

①교부 번호	②교부 일자	③기관명	④지정일	대 표 자			
				⑤성 명	⑥생년월일	⑦수 의 사 면허번호	⑧면허일자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효율적인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을 도모 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필요한 사업비 지원

3. 관련조문

- 안 제3조(충청북도 자연유산위원회 설치)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자연유산위원회를 둔다.
- 안 제36조(보조금)
 -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관리단체가 그 자연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보호에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도지정자연유산의 관리·보호, 수리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기록의 작성·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36조(보조금)에 의거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대한 비용 추계

나. 추계 결과 : 1,515,000천원

- 연 사업당 최대 300,000천원 소요 예상
- 연 자연유산위원회 최대 3,000천원 소요 예상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50%, 시·군비 50%

※ 자연유산위원회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수인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	-	-	-	-	-	-	
세 출	303,000	303,000	303,000	303,000	303,000	1,515,000	
(안 3조) 자연유산위원회 (연3회 운영)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안 36조) 보조금 자연유산 보존관리사업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36	
-	-	-	-	-	-	-	
재원 조달	303,000	303,000	303,000	303,000	303,000	1,515,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53,000	153,000	153,000	153,000	153,000	765,000
	지방세	153,000	153,000	153,000	153,000	153,000	765,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시군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자담 등)	-	-	-	-	-	-	

관련 법령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제1항

①“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

4. “시·도자연유산”이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아닌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10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천연기념물등[종(種)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천연기념물등의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천연기념물등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천연기념물등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등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천연기념물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천연기념물등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4.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5.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6. 그 밖에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시·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제1항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에 있는 자연유산 중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제12조에 따른 명승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